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3월 19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19.(화) 오전 11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3. 18.(월)	담당부서	가스산업과
담당과장	황병소 과장(044-203-5230)	담 당 자	김효 사무관(044-203-5216)

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

-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국무회의 통과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**발전용 액화천연가스(LNG)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**하는 내용의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**3.19.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어 **4.1.(월)부터 시행한**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따라, 4월 1일부터 '발전용'으로 수입되는 **액화천연가스**에 대한 **수입부과금이 현행 kg 당 24.2원에서 3.8원으로 인하**되며,

○ 이에 더해,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**'열병합용'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.8원도 전액 환급**할 예정이다.

□ **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**는 미세먼지 등 **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**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.

○ 현재, **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**의 **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**인 반면, **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.5배 수준**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.

< 발전용 유연탄·LNG의 환경비용 및 현행 제세부담금(원/kg) >

구 분	미세먼지 환경비용				현행 제세부담금			
	황산화물 비용	질소산화물 비용	초미세먼지 비용	합 계	개별 소비세	수입 부과금	관세	합 계
유연탄	40.3	42.5	2.0	**84.8**	36	-	-	**36**
LNG	3.3	35.9	3.4	**42.6**	60	24.2	7.2	**91.4**

□ 이에, **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'세법 개정안'**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**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**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하였다.

○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, **발전용 유연탄**은 **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**하여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하고,

○ **발전용 액화천연가스**의 경우에는 **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, 수입부과금을 24.2원에서 3.8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해**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.

□ 이번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

○ **4월 1일부터** 전기만 생산하는 **'일반발전용' 액화천연가스**의 수입부과금은 kg당 **24.2원에서 3.8원으로 인하**하며,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**'열병합용'은 인하 조정된 수입부과금 3.8원도 전액 환급**한다.

- **'열병합용'**은 '일반발전'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%p 우수하여 오염물질·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하여 환급대상으로 하였으며, **집단에너지 사업자, 자가열병합 발전,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**된다.

- 또한, 기존에 '18년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되어있던 **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'19.1월부터 환급**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.

□ 한편, 액화천연가스 **개별소비세**의 경우 **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**하고 **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.4원을 적용**하는 내용으로 **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**되었으며,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**4.1.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**

<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 >

구 분		특 성	제세부담금 조정
일반	일반 LNG 발전	한전 발전자회사 등 LNG로 전기를 생산하는 「전기사업법」상 발전사업자	개별소비세 60→12원/kg 수입부과금 24.2→3.8원/kg
	직수입 자가발전	LNG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수입하여 일반 LNG 발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 및 자가 사용	
열병합	집단에너지 사업자	열·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, 열은 공급구역 내 수요자에게 공급	개별소비세 60→8.4원/kg(탄력세율) 수입부과금 24.2→0원/kg(환급)
	자가열병합 발전	10MW 이하의 소규모 열병합 발전, 공동주택·산업체 등 수요처에 공급	
	연료전지	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열·전기를 동시에 생산	

□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**100MW 미만의 '열병합용' 가스요금은 4.1. 부터 6.9% 인하**할 예정이다.

○ 한편,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'일반 발전용・집단에너지용' 액화천연가스'LNG' 요금의 경우 5.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할 예정이다.

□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**미세먼지(PM2.5) 감축량은 연(年) 427톤으로 전망**했다.

○ 산업부는 이와 함께, **금년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**을 위해 ①**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** 시행**(전체 석탄발전소)**, ②**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***, ③**저유황탄 사용 확대**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.

* 계획예방정비(48개),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(4개), 사고정지(2개, 태안9・10호기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김효 사무관(☎ 044-203-52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